

[K-희망사다리] 육아휴직급여 등

2025.04.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

PART. 2

생애주기별 국민생활 서비스

함께하는 더 커지는 : 가족·여성

육아휴직급여+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

육아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다양한 휴가 제도입니다.

+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

1350





단축급여

육아휴직급여

▲ 지원대상

육아휴직 급여

•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※ 지자체에 따라 다름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
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
- ※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

▲ 지원내용

육아휴직 급여

육아휴직 1~3개월: 통상임금 100%(상한액 250만 원), 4~6개월 통상임금 100%(상한액 200만 원),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%(상한액 160만 원)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

- •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: 월 통상임금의 100%(상한액 220만 원, 하한액 50만 원)×(10/단축 전 소정근로시간)
-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: 월 통상임금의 80%(상한액 150만 원, 하한액 50만 원)×{(단축 전 소정근로시간-단축 후 소정근로 시간-10)/단축 전 소정근로시간}
- · 육아휴직 급여
- ·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

▲ 신청방법· 온라인 신청: 고용24

- ㆍ방문 또는 우편 신청: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
- ·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경우에는 육아휴직 통합 신청 가능(2025년 1월 1일부 터)
-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서면(전자적방식포함)으로 허용의사를 표시해야 하고, 사업주가 기 간 내에 미응답 시 신청한대로 사용 가능(2025년 1월 1일 부터)

▲ 문의·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1350)